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 시행

우리나라 수입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이 올해 6월 1일 선적되는 화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.
대상은 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침엽수 활엽수 목재 포장재입니다.
별도의 증명서는 필요 없으며, 소독처리마크가 표지 안된 목재포장재는 폐기 또는 반송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수입업체에서는 필히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내용은 국립식물검역소(www.npqs.go.kr) 홈페이지 및 한국파렛트협회(www.kopal.or.kr)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추가 발표된 각 국의 검역규정을 기재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◎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 주요내용 안내
◎ 페루, 미국, 아르헨티나, 볼리비아, 노르웨이, 루마니아의 목재포장재 검역시행 안내.

수입 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 주요내용 안내

1. 목재포장재 검역 실시 배경

수입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는 생목재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아 외래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우리나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목재포장재에 대한 수입검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.

※관련규정: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(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5-3호)

2. 검역 시행일

2005년 6월 1일(선적일 기준)부터 시행됩니다.

3. 목재포장재란?

목재파렛트 · 나무상자 · 짐깔개(Dunnage) · 목재충진재 등 화물을 지지 · 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산물(종이제품은 제외)을 말합니다.

4. 소독 대상 목재포장재

침엽수 및 활엽수 목재포장재

<제외 물품>

- 합판 · 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, 파티클보드, 배향성 스트랜드보드와 웨이퍼보드, 섬유판, 고밀도화 목재, 집성재
- 펄프, 응집코르크, 목모, 목분, 코르크분

5. 소독방법: 다음 중 1가지 방법으로 소독

<열처리: Heat Treatment>

- 목재중심부 온도 56℃이상에서 30분 이상 처리

<메틸브로마이드(Methyl Bromide, MB)훈증>

- 소나무재선충 분포국에서 수입되는 소나무속 · 잎갈나무속 · 개잎갈 나무속 목재포장재: 24시간 훈증

• 일본, 중국, 대만, 미국, 캐나다, 멕시코, 포르투칼, 베트남(소나무속)

온 도	약량 (Dosage rate)	최저농도(g/㎥)
		24시간
21℃ 이상	48	24
16℃ 이상	56	28
11℃ 이상	64	32

• 그 이외 목재포장재: 16시간 훈증

온 도	약량 (Dosage rate)	최저농도(g/㎥)			
		0.5시간	2시간	4시간	16시간
21℃ 이상	48	36	24	17	14
16℃ 이상	56	42	28	20	17
11℃ 이상	64	48	32	22	19

6. 소독처리마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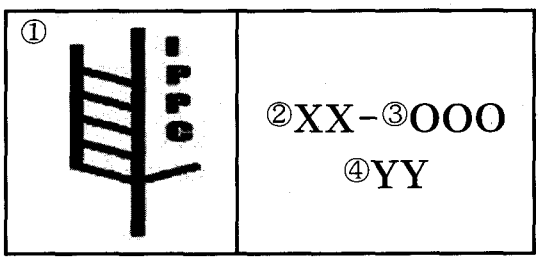

① IPPC 심볼 ② 국가 ISO 두자리 코드 ③ 소독처리업체 고유번호 ④ 소독처리방법
※ 국제기준 ISPM No.15의 소독처리마크이며, 국가마다 모양이 조금씩은 다르나, ①~④ 항목은 기본으로 마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.

7. 요건 미부합 목재포장재의 처분

<소독>
- 소독처리마크 표지가 있으나 금지병해충 외의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된 경우

<폐기 또는 반송>
- 소독처리마크가 없는 경우
- 소독명령을 받았으나 소독이 불가능하거나 소유자가 폐기 또는 반송을 원할 경우
- 금지병해충이 발견된 경우

※ 화물과 포장재가 분리가능한 경우 목재포장재만 처분

8. 목재포장재 수입검역 절차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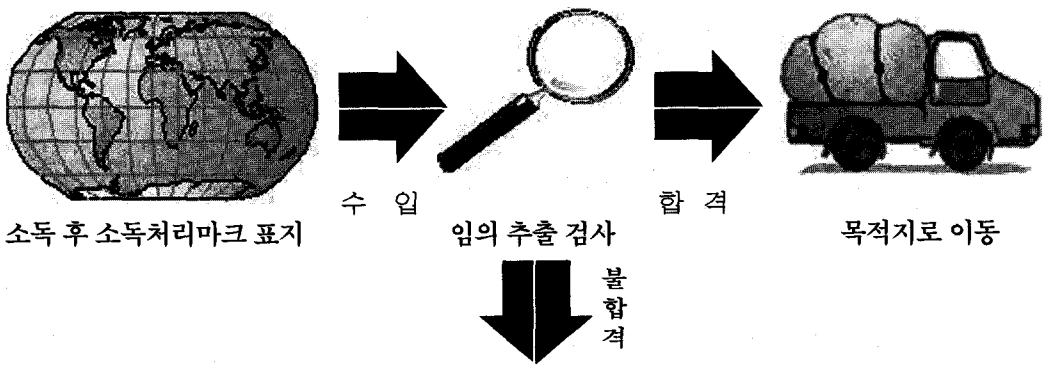

열처리 또는 MB훈증 소독

- 금지병해충 이외의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된 경우

폐기 또는 반송

- 소독처리마크가 없는 경우
- 금지병해충이 발견된 경우
- 소독명령을 받았으나 소독이 불가능 하거나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

아르헨티나, 페루, 미국, 볼리비아, 노르웨이, 루마니아의 목재포장재 검역시행 안내

<아르헨티나>

□ 검역대상 : 아르헨티나로 수입 또는 경유되는 모든화물의 목재포장재
□ 소독방법 : 국제기준 ISPM No.15의 열처리 또는 MB훈증 소독 중 1가지
□ 증명방법 : 목재포장재 자체에 소독처리마크를 표지
□ 시 행 일 : 2005년 6월 1일

<페루>

□ 검역대상 : 페루를 경유하거나 페루로 수입되는 화물의 목재포장재
- 제외 품목
  - 두께 6mm 미만의 목재포장재
  - 합판, 파티클보드, 배향성스트랜보드, 베니어등과 같이 접착제. 열. 압력등의 가공공정을 통해 병해충을 사멸시킨 것

□소독방법 : 국제기준 ISPM No.15의 열처리 또는 MB훈증 소득 중 1가지
□증명방법 : 목재포장재 자체에 소득처리마크를 표지
□시 행 일 : 2005. 9. 1

<미국>

□ 시 행 일 : 2005. 9. 16.(도착일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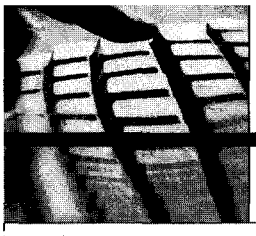

□ 검역대상 : 목재포장재
- 상품을 지지, 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 산물 (종이제품 제외, 짐깔개(dunnage) 포함)

□ 제외물품
- 합판 · 파티클보드와 같이 가공 처리된 목재포장재
- loose wood packing materials(제재 또는 대패질 과정에서 생산되는 톱밥, 대팻밥 등의 목재포장재)
- 두께 6mm 이하의 나무조각(wood pieces)

□ 요건 : 열처리 또는 MB훈증 중 1가지 방법으로 목재포장재 소독 후 소독처리마크 표지

□ 요건 불이행시 조치 : 해당 목재포장재 즉각 재수출(반송)

<볼리비아>

□ 검역대상: 가공처리 안된 두께 6mm 이상의 목재포장재(침엽수 및 활엽수)

□ 수입요건: 국제기준 ISPM No.15대로 소독처리(열처리 또는 MB훈증) 한 후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를 표지

□ 시 행 일 : 2005. 9. 2.

<노르웨이>

□ 검역대상 : 침엽수 목재포장재

□ 수입요건: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, 목재포장재는 수피(樹皮, bark)가 없고, 하늘소류(Monochamus spp.) 해충에 의한 벌레구멍이 없어야 하며, 목재 함수율이 20%이하여야 함

※ 노르웨이가 국제기준 ISPM No.15에 따라 목재포장재 검역을 실시한다는 내용도 입수되었으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므로 파악 되는대로 추가 게재할 예정임

<루마니아>

□ 검역대상 : 침엽수 목재포장재(측백나무속 제외)

□ 수입요건 :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, 목재포장재는 수피(樹皮, bark)가 없고, 하늘소류(Monochamus spp.) 해충에 의한 벌레구멍이 없어야 하며, 목재 함수율이 20%이하여야 함